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위원 황철규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행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제 내용과 규모에 비해 조례 명칭과 조항의 표현이 다소 포괄적이고, 미래교육 중심의 협력체계가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구의 목적과 사업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교육청·지자체 간 협력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개정안은 1조에서 지역사회 지원 기반 교육협력, 미래역량 강화, 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에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화 교육협력사업이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에서는 지역교육과정 지원, 마을 연계 활동, 진로·직업체험, 지역 협력 프로젝트 등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지구 지정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 계획, 행정·재정지원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의 협력이 더욱 체계화되고, 지역 기반 교육협력 정책의 정체성·목적이 명확히 자리잡게 됩니다.

- 또한 ‘미래교육지구’라는 기존 명칭보다 실제 사업 성격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교육협력특화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교육현장, 지자체, 지역사회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정책 홍보 및 사업 추진의 일관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아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성장 경험을 확장하고 서울시 전체 교육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